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6. 17 선고 2021나4104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

담당변호사 이선숙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길

변 론 종 결 2021. 5. 20.

판 결 선 고 2021. 6. 17.

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9가단221867 판결

주 문

1.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1 지분에 관하여, 피고들과 D 사이의 2017. 6. 6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나. D에게,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. 6. 19.

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2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, 피고 B는 16/110 지분, 피고 C은 4/110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 1) 주위적 청구취지 : 주문 제1의 가., 나.항 기재와 같다.

예비적 청구취지 :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1 지분에 관하여, 피고들과 D 사이의 2017. 6. 6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 원고에게, 피고 B는 87,643,915원, 피고 C은 21,910,979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 4쪽 12행의 ‘이전하는 주는’을 ‘이전하여 주는’으로 고치고,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며, 5쪽의 ‘다. 이 부분 결론’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추가판단 부분]

피고들은, 피고들과 D를 비롯한 망 G의 상속인들이 피고들의 기여분을 참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들이 전부 취득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D의 상속분은 ‘0’이라고 주장한다(결국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으로 보인다). 그러나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2호증(사실확인서, 이 사건 항소제기 후인 2021. 3.경 작성된 것임)을 비롯하여 피고들이 제출한

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, 따라서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관한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.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[고쳐 쓰는 부분]

다. 이 부분 결론

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각 2/11 지분에 관한 2017. 6. 6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이 각 이전등기를 마친 지분(피고 B 8/10 지분, 피고 C 2/10 지분) 중 D의 위 해당지분{피고 B : $16/110$ 지분($= 8/10 \times 2/11$), 피고 C : $4/110$ 지분($= 2/10 \times 2/11$)}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승원, 판사 신진화, 판사 이주현

【별지】

부동산의 표시

1. 서울특별시 은평구 , 대 31.7㎡
2.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상 세멘트블록조 평육개 2개건
점포1동
건평25평7홉5작
외2개평31평2홉8작
내건평6평2홉5작
외2개평7평8홉7작

1) 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를 각 변경하였다.